

# -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안 번호	5518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가. 시민의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과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제2항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항의 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2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임및위탁)
- 2019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 [질병관리본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은 민의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환자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2017년 통계청자료)로 적극적인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담당자 역량강화 등 업무 추진시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
  -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 함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수행 등

## 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개요

- 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2
- 운영 : 17개 시·도별로 운영
- 구성 : 지원단장 1명, 팀장 및 팀원 등 6명 이내
- 역할 : 인식 수준 개선 교육홍보,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19년 예산기준)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29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299,410		
인건비	228,503	· 인건비 228,503 - 지원단장 및 직원 등	
운영비	56,937	· 운영비 56,937 - 수용비, 공공요금, 관리비 등	
여비 등	13,970	· 여비·업무추진비 13,970 - 관내·외 출장비, 월례회의, 평가대회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

아. 2019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19. 9. 24) 심의결과 : 적정(신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 관 련 법 규

##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지역보건법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 3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 [보건건강과-2124호('19.1.16)]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계획서 20페이지)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5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위탁사무 선정기준)**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위임 및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7 2019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 II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1. 사업목적

-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략 개발,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관리 강화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을 통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 2. 사업대상 및 소요 예산

- 사업대상 질환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 심뇌혈관질환 :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 사업대상 : 시·도 지역사회 주민전체(고위험군, 환자 및 환자 가족 등)
- 사업수행주체 : 광역자치단체
- 사업방식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위탁 운영 등
  - 시·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가능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17.5.30. 공포·시행)
  - 단, 경기도, 대구광역시는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대신 각각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 ※ <붙임 4> 위촉장 양식 참조
- 사업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붙임 2】**

#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추진계획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시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제2항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항의 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2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임 및 위탁)
- 2019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442(19.2.27)]

## II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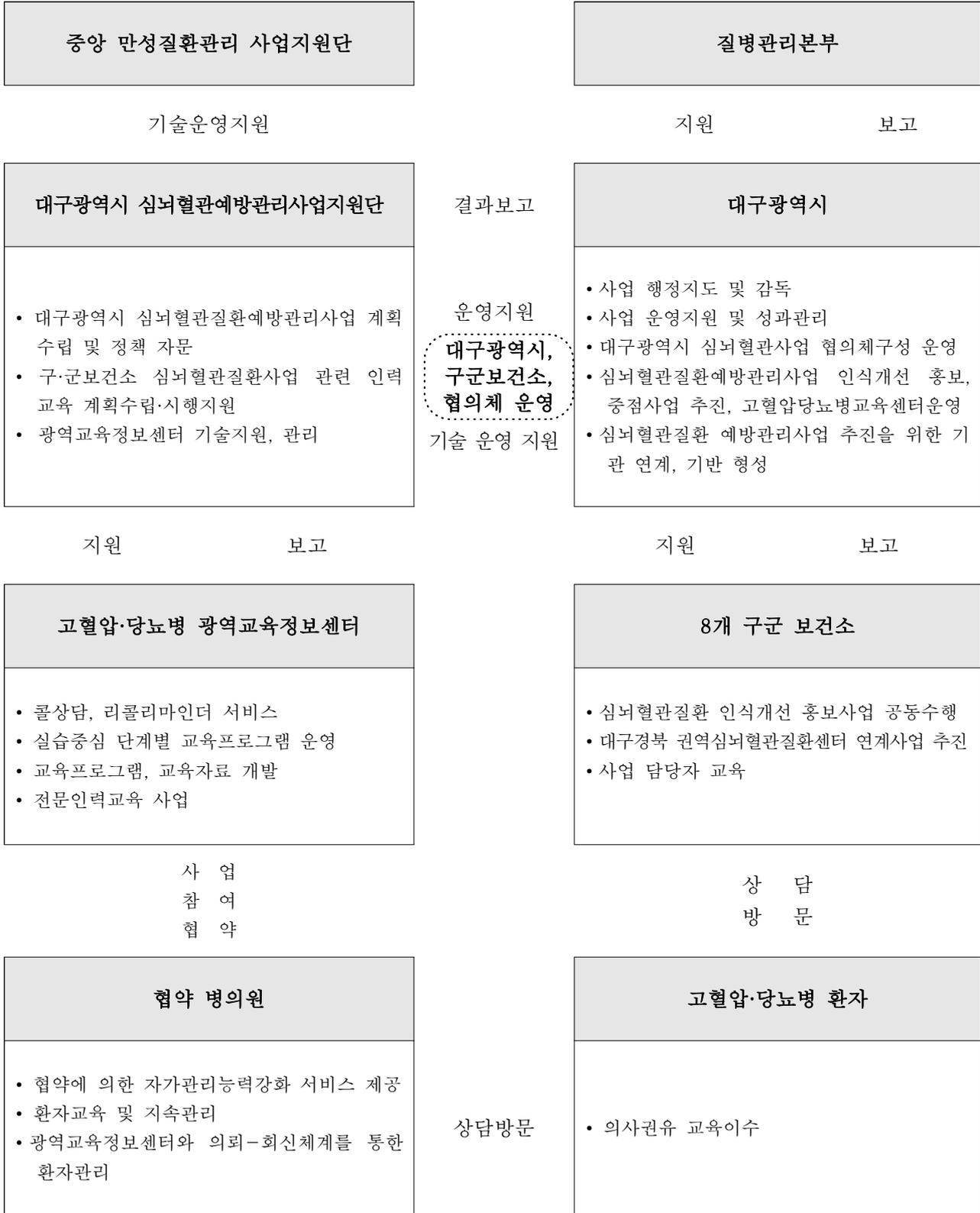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은 시민의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7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 근거기반 마련 필요성 대두.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 기존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해오던 사업이지만 심뇌혈관질환예방법률 및 질병관리본부 지침, 타 시도 사례,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Ⅲ 지원단 현황

####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개요

- ◆ 목적
  -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예방관리 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관리 강화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을 통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수준 향상 도모
- ◆ 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 ◆ 운영 : 17개 시·도별로 운영
  - ※ 대구광역시, 경기도는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기능 포함 수행
- ◆ 구성 : 지원단장 1명, 팀장 1명, 팀원 5인 \*'19년 기준
- ◆ 역할 : 인식 수준 개선 교육홍보,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실시
- ◆ 실적 \*'18년 기준
  - 인식개선 : 캠페인 73회(레드서클 1회, 공동캠페인 72회)
  - 기술지원 및 평가 : 3회(교육홍보사업 기술지원 1회, 구군 건강 및 질환수준 통계자료 생산 및 보급 1회, 구군 보건소 평가대회 1회)
  - 전문인력 교육 : 56회(질병관리본부 고혈압당뇨병 맞춤형 교육 10회, 구군 보건소 역량강화 교육 6회, 주민대상 교육강사 풀 구축 및 구군 보건소 지원 40회)
  - 네트워크 구축 운영 : 52회(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의 12회, 지역사회 연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회의 30회, 건강리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양성 10회)
  - 특화사업 : 고혈압당뇨병 쿠킹스튜디오 운영 24회, '자기관리능력강화서비스 민간병의원'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7개소,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2,730회

※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체계



## ○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현황

- ◆ 2007년 2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 1차 ~ 10차 : 2007.02.09.~2016.12.31.(대구광역시 의사회)
  - ▶ 11차~13차 : 2017.01.01.~2019.12.31.(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타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현황

- 대구,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연번	시·도명	운영방식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	서울	민간위탁	3년	849,924	
2	부산	민간위탁	3년	459,412	
3	대구	민간경상보조	2년	299,410	민간위탁 변경 추진
4	인천	민간경상보조	3년	69,412	민간위탁 변경 추진
5	광주	민간위탁	2년	1,154,508	
6	대전	민간위탁	2년	69,412	
7	울산	민간위탁	3년	677,230	
8	세종	민간위탁	3년	662,248	
9	경기도	민간경상보조	3년	7,110,958	민간위탁 변경 추진
10	강원도	민간위탁	2년	1,438,826	
11	충청북도	민간위탁	3년	69,412	
12	충청남도	민간위탁	3년	69,412	
13	전라북도	민간위탁	3년	433,712	
14	전라남도	민간위탁	2년	2,222,592	
15	경상북도	민간위탁	3년	2,588,512	
16	경상남도	민간위탁	2년	593,188	
17	제주	민간위탁	3년	1,161,832	

## ○ 질병관리본부 지침 「2019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

- 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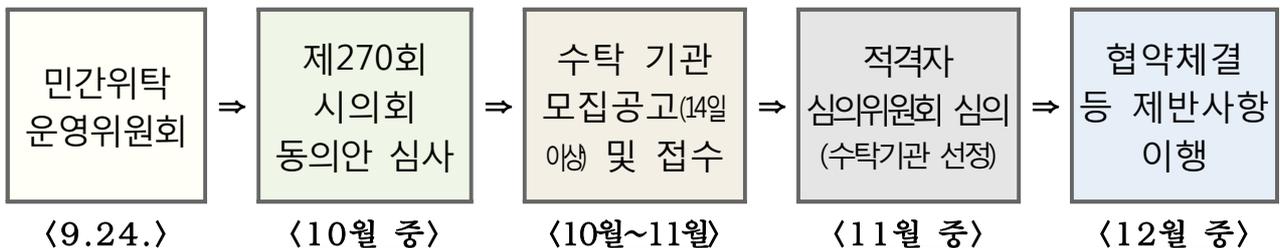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방식

시·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가능

## IV 세부추진계획

### 1. 위탁개요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기관 민간위탁
- 위탁예산 : 29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19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
  -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 함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수행 등
- 위탁조건
  - 수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위·수탁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
- 위탁절차



## 2. 수탁기관 선정

- 공고기간 : 2019. 10월중 (14일 이상)
- 공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5일 이상)
- 선정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 (11월중 개최예정)
- 응모자격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경력 및 건강증진 분야 교육 시행 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 성 : 6 ~ 9인 이내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수,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위촉방법 : 공개모집(공고)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등 경험과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 위탁기관 선정
  - 2개 이상 기관 접수 시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한 1개 기관 선정
  - 1개 기관 접수 시 : 위탁단체 적격여부 심사

### 3. 운영위탁비 산정(안)

○ 연간 운영 위탁비 \*19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인건비	소계	228,503	
	보수	218,703	직원 6명
	기타직보수	4,800	지원단장 1명
	기타인건비	5,000	교육강사비, 지원단 위원 자문수당 등
운영비	소계	56,937	
	일반수용비	11,870	교육비, 평가대회, 홍보물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500	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임차료	6,148	복사기, 정수기, 차량, 캠페인 행사 장비 등
	재료비	1,000	교육실습 재료비
	복리후생비	18,000	직원 4대보험료 등
	기타운영비	15,419	간접관리비
여비	소계	6,930	
	국내여비	6,930	관내 및 관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소계	7,040	
	사업추진비	7,040	월례회의, 워크샵, 평가대회 등
전체 총액		299,410	

※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

##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사 : 2019. 10월중
-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19. 10월중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2019. 11월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12월중